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에서 『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』 근거 규정 마련(토요일 휴무제 도입)
- 휴직 후에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 연가를 할 수 없어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코자 연가공제방법 개선.

3. 주요내용

- 토요일 휴무제 도입 근거 규정(제16조의2)
- 휴직후 복직시 당해연도 연가일수 계산방법 신설(제20조②항)
- 관련법령 개정으로 내용조정
(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⇒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)

4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-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임.
- 휴직자에 대한 복직시 사실상 불가능했던 연가 마련 규정을 마련하고,
- 정부방침에 의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행정기관 근거 마련 조례안으로서 타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.